유안타개인체크카드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을 말한다.

3.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인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한다.

4. 결제계좌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와 연계되어 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본인회원의 계좌를 말한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 본인회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제3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회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절차 등을 거쳐 발급한다.

② 회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된다.

②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한다.

③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은 회사가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한다.

④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한다.

⑤ 카드의 갱신, 대체, 재발급 등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된다.

제5조(카드의 관리) ①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고객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연회비 등) ① 회사는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연회비는 회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된다. 기본연회비는 고객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되며, 회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기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연회비를 납부한 고객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고객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체크카드 결제계좌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 우
3.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고객의 법정 대리인이 회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고객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회사는 고객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확인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다.

⑤ 본 조 제1항, 제3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고객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고객에게 알린다.

제9조(카드의 이용) ① 고객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카드사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회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고객은 이용 당시 결제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부정사용 방지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카드의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회사와 계좌이체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범위 내로 한다.

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 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한 경 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다. 다만,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다.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다.

제12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 고객은 회사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고객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인출과 관련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입출금거래 이용약관 등이 적용된다.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카드이용의 제한) ① 고객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잔액에 관계없이 고객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약정 인출가능금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회사가 정한 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③ 카드의 결제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14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카드의 이용대금은 고객의 결제계좌에서 거래 즉시 인출된다.

제15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취소) ①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카드사로부터 해당 취소전표 매입자료를 접수 후 결제금액을 익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결제계좌로 반환(환급)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카드대금 환급이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질 경우,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고객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회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고객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고객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고객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하고 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단,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9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 고객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고객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 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회사의 정당한 요구에 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고객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사의 조사결과 고객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고객은 제2항 각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회사는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회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② 가맹점과 고객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카드사를 통하여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회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제22조(위반할 경우 책임)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4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